

WTO/DDA 농업협상과 대응전략

WTO/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Strategies for them

김 병 철*
Kim, Byung-Chul

1. 머리말

반세기전인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족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는 제7차 도쿄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기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진 않았다. 이후 농산물 교역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1986년 GATT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UR협상에서는 당시까지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던 관세인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까지 감축대상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4년에 이르러 UR협상이 최종 타결을 보고 199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단계 변화된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당시 UR협상의 주요내용은 시장개방,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감축에 관한 논의였다. 시장개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품목을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개방토록하고 수입이 거의 없던 품목에 대하여는 3~5%의 관세율로 의무적으로 수입토록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을 부과하는 한편, 국내소비량의 3% 이상 수입해 오던 품목에 대해서는 1986~88년간 평균수입 수준의 수입을 허용하는 현행시장접근(CMA, Current

Market Access) 제도를 도입하였다. UR규정에 의하면 선진국은 6년간(1995~2000) 평균 36%, 최저 15%로 관세율을 삭감토록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10년간 (1995~2004) 평균 24%, 최저 10%를 삭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특례조치를 인정하였으며¹⁾, MMA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량은 1986~88년(기준연도) 평균 국내쌀소비량을 기준으로 1995년에는 기준연도 쌀소비량의 1% 상당치인 5만 1천톤을 수입토록 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의무수입량을 점점 증가시켜 2004년에 가서는 기준연도 쌀소비량의 4%인 20만 5천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금년 3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세부원칙(modality)의 확정일정을 앞두고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2월 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3월에는 이 초안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초 예정했던 일정과는 달리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1개월이상 검토한 초안의 수정안도 초안의 내용과 별 차이점이 없었던 점에서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의 난항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 WTO/DDA 농업협상 동향

그간 진행되어 온 WTO 협상동향을 보면, 1996년 제1차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위원회의 수

*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 (kimbc@karico.co.kr)

1)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이미 쌀 관세화를 실시하고 있다.

출·수입국간 협상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서비스외에 여러 분야에 걸쳐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998년 12월 제3차 씨애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씨애틀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유를 보면, 우선 반덤핑, 노동, 농업 분야에서 이해 당사국간 견해차가 커고 개도국은 UR 이행문제와 선진국 중심 회의운영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동시에 NGO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었다.

한편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부문 추가협상이 추진되었으나 농산물 수출국들(Cairns Group)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수준도 공산품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Non-Trade Concerns)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협상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대립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씨애틀 각료회의 실패에 따른 다자간 세계무역체제의 위기감으로 인해 당해 회기내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각국은 합의도출에 노력한 결과, 이미 시작된 농업, 서비스분야 외에 공산품의 관세인하, 반덤핑 분쟁처리, 무역, 환경 등 4분야 협상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인 이른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새로운 무역협상의 기본방향은 ①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 재확인, ②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추진, ③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의 반영, ④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 등²⁾ 시장지향적 원리와 비교역적 기능의 조화를 협상의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의 일정은

2003년 3월말까지 관세·보조금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2003년 9월에 개최되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여 일괄 타결방식으로 2004. 12. 31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WTO/DDA 농업협상 일정에 따라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2월 12일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초안을 기초로 하여 2월말 개최된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초안을 3월 19일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초안중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을 뿐 당초 초안의 내용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이것은 각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의 반복이 예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WTO/DDA 농업협상의 관심사항은 크게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하빈슨의장이 발표한 초안 수정안의 관세 감축안을 보면, 기존 관세율을 기준으로 고율관세, 중간율관세, 저율관세품목 등 3개로 분류하여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현황을 보면, 총 1,307개 품목중 0~10 % 세율품목이 16.9 %, 10~20 % 품목이 26.7 %, 20~50 % 품목이 34.0 %, 50~100 % 품목이 13.2 %, 100 % 이상 품목이 9.1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300 %), 마늘(400 %), 참깨(700 %) 등 양념류와 대두(541 %), 옥수수(365 %) 등 141개 품목이 대부분 90 % 이상 고율관세 품목이다³⁾. 하빈슨 초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시행연도로 부터 5년간에 걸쳐 기존관세율이 90 %가 넘는 고율관세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에 대하여 평균 60 %, 최소 45 % 만큼을 감축토록하고, 15~90 % 범위의 중간율관세품목에 대하여는 평균 50 %, 최소 35 %를 감축토록 하며, 15 % 이하의 저율관세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40 %, 최소 25 % 만큼을 감축토록 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0년간에 걸쳐 기존 관세율이 120 %를 초과하는 고율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2) http://www.maf.go.kr/04_overseas/04_0101.asp.

3) 김충실, 2003. 3, “쌀 관세화의 충격과 협상 대응전략”, 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 및 정책적 전략 심포지엄자료, 한국쌀연구회.

평균 40 %, 최소 30 % 만큼을, 60~120 % 사이의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35 %, 최소 25 %를, 20~60 % 사이의 관세품목에 대하여는 평균 30 %, 최소 20 %를, 20 % 이하의 저율관세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25 %, 최소 15% 만큼의 관세율을 각각 감축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품

목(SP, Special Product)의 경우 10년간에 걸쳐 평균 10 %, 최소 5 % 만큼만 관세율을 감축토록 하는 개도국 배려안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조금감축과 관련하여 국내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과 관련된 보조금 조치는 사용하고 있

표 1. DDA 세부원칙초안 수정내용중 관세감축률 내역

선진국			개도국				
관세율	감축율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율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90 % 초과	60 %	45 %	5년	120 % 초과	40 %	30 %	10년
15~90 %	50 %	35 %		60~120 %	35 %	25 %	
15 % 이하	40 %	25 %		20~60 %	30 %	20 %	
				20 % 이하	25 %	15 %	
				특별품목 (SP)	10 %	5 %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3. 3

지 않으며, 국내보조금중 가장 비중이 높은 허용보조(green box) 항목에는 농업기반인프라지원, 환경보전지원, 공공재고유지, 자연재해지원, 생산분리 직접지불(decoupled income support)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는 농촌용수, 경지정리 등 농업인프라에 투자되는 보조금이 가장 많다. 보조금 중 가장 큰 관심은 감축대상보조(amber box)에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 감축대상 보조액(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규모가 2004년에 약 1조 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중 90 % 이상이 쌀 수매와 관련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가 하빈슨 초안대로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국내 수매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빈슨의장이 발표한 초안 수정안의 보조금 감축안의 내용에는 감축대상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5년간 60 %를 삭감토록 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10년간 40 % 삭감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면 감축대상 보조금을 5년간에 걸쳐 2004년의 40 % 수준인 5,960억원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표 2. DDA 세부원칙 초안 수정내용중 감축대상보조 감축률 내역

구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률	60%	40%
이행기간	5년	10년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3. 3.

다음으로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물량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1999~2001년 국내 평균 소비량의 10 % 미만인 품목에 대하여는 5년간에 걸쳐 10 %까지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1999~2001년 국내 평균소비량의 6.6 %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6.6 %까지 관세할당량을 증량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품목의 경우에는 관세할당량의 증량의무를 면제케 함으로써 개도국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만 유지한다면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2004년도 MMA 물량인 4% 수준으로 관세할당 수입물량을 결정할 수 있어 농업부문의 큰 위기는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DDA 세부원칙 초안 수정내용 중 저율관세쿼터 내역

선진국	개도국
<p>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 % 미만 품목은 10 %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8 %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12 %까지 증가</p>	<p>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 % 미만 품목은 6.6 %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5 %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8 %까지 증가 * SP품목은 증량 면제</p>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3. 3

3. DDA 농업협상 관련 현안사항

앞장에서 살펴 본 WTO/DDA 농업협상 동향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면⁴⁾, 가장 큰 관심사항은 관세감축에 관한 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빈슨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을 관세화개방을 할 경우 적어도 기준년도 관세율의 45 %는 감축해야 하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의 수입가격은 80kg 가마당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쌀 가격을 16만원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약 38 %나 하락하게 됨으로써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며, 쌀소득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의 증량에 관한 사항으로 케언즈그룹(Cairns Group)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TRQ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TRQ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경우 수입국의 국내농업이 큰 피해를 입어 식량안보나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TRQ 증량에 반대하고 있다.

세번째는 허용보조(Green Box)의 범위와 요건이다. 허용보조는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여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인프라 건설과 농촌가공산업 육성 등 농업구조조정 지원, 부채경감 지원이나 논농업직접지불 등 생산중립적 소득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허용보조에

대하여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과 수출개도국들은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책의 범위를 축소하고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요건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등 NTC 국가들은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을 보다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특별 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수입제한품목을 관세화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에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피해구제 제도로 농산물에 대하여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 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미국, 케언즈그룹, 수출개도국 등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EU, 일본 등 농산물수입국과 동구권 국가들은 수입제한조치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하에서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번째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의 반영유무에 대한 논란이다.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무역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기능으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활성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이른바 NTC 그룹은 관세나 보조금을 급격히 감축한다면 국가에 따라서는 농업의 유지자체가 어렵게 됨으로

4) http://www.maf.go.kr/04_overseas/04_0101.asp.

서 NTC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출국들은 NTC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무역자유화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한 농업협상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개도국 우대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44개 WTO 회원국중 4분의 3이상이 개발도상국이며, 이를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발전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담을 더욱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선진국들도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며, 농업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DDA 농업협상관련 현안사항과 함께 2005년 이후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는 2004년 농업협상종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산물협상과 2004년에 있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에 관한 협상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긴 하나, 만약 재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안이 2004년 말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쌀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관세화로 수입이 개방될 것이다. 이 재협상과정에는 우리와 보조를 함께 해오던 일본이 19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 개방하였으며, 대만도 2003년부터 쌀시장 관세화 개방방침을 WTO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제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 밖에 없다는 현실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4.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향후 WTO 협상일정을 보면, 당초 2003년 3월 31일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토록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세부원칙의 확정과 이에 대한 각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제

5차 각료회의가 끝나는 시점부터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업부문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고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일정에 의하면 오는 9월 제5차 각료회의까지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하빈슨의장 초안의 관세와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관세·보조금의 감축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축률로 나타나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관세나 보조금의 감축폭을 최소화하면서 품목별로 그 율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감축대상보조금(AMS)이 들어드는 현실에서 앞으로 쌀 수매가는 물론 내려야 할 것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경우 수매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쌀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DDA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직접 자불보조금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협상과정에서는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NTC 그룹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식량안보, 농촌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내세워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DDA 농업협상관련 현안사항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UR에서 인정받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 높은 소득수준, 첨단제품의 수출, 고도화된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개도국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열악성, 구조조정기간 필요성 등 개도국 지위유지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협상 단계에서는 이해 당사국을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농업구조의 개편을 촉진하는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쌀 개방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세한 영농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영농규모화정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쌀소득 등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시장 물량조절을 위해서는 농지은행기능 등이 도입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

5. 맷는말

하빈슨 의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 내용이 별 수정없이 확정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다면 국내농업에 대한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25.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3.7 %를 점하고 있는 쌀농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여 생산농가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을 영원히 피해 나갈 방법은 현재로서는 찾을 도리가 없다.

현재 WTO/DDA 농업협상 중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현안사항은 우리나라가 UR에서 얻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 2004년 말까지 재협상 하기로 되어있는 쌀의 관세화 개방문제를 앞두고 정부나 농민단체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주곡인 쌀에 대한 국민적 정서, 식량 안보적 중요성이나 전체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관세화 유예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면서도 MMA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차원에서 각국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는 없다. 이웃 일본은 1993년 UR 협상 이후 단계적 시장개방 조치를 염두에 두고 추곡수매가 절하, 미질향상, 농가소득보전 등 구조조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착실한 준비작업을 거친으로서 예정보다 빠른 1999년부터 쌀 관세화 개방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의 쌀농업은 지금까지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높은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외국산 쌀의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으로 분석하고 있다⁶⁾.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정책이 형식에 거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실공히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충격은 세계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은 겪어야 할 시련임에 틀림없다. 다만 충격의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도약을 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나면 한층 체질이 강화된 새로운 농산업기반이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우리 농업에 거는 한가닥 희망일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도약을 위한 농정이 필요한 때이며, 그것은 과감히 실천하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